

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2750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일자 : 2025. 6. 18.

제안자 : 주택공간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「건축물관리법」 과의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단서조항을 신설함
-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점검 범위를 확대하고, 시장이 안전관리가 시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예외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함.

2. 수정의 주요내용

- 「건축물관리법」 에 따른 점검 또는 보수·보강 등의 지원을 받은 소규모 공동주택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대상에서 제외함.(안 제5조의2제1항)
-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점검 업무 수행의 범위를 확대·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5조의2제1항제3호)
- 시장이 안전관리가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함(안 제5조의2제2항)

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「건축물관리법」에 따른 점검 또는 보수·보강 등의 지원을 받은 소규모 공동주택은 제외한다.

안 제5조의2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그 밖에 재난·재해 등으로 인한 위험 시설물의 보수·보강

안 제5조의2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.

안 제5조의2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만, 시장이 안전관리가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제5조의2제3항 중 “제1항”을 “제1항 및 제2항”으로 한다.

수정안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제5조의2(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) ① 시장은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34조에 따라 구청장이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	제5조의2(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<단서 신설></u>	제5조의2(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. 다만, 「건축물관리법」에 따른 점검 또는 보수·보강 등의 지원을 받은 소규모 공동주택은 제외한다.</u>
1. 2. (생략) <u><신설></u>	1. 2. (현행과 같음) 3. 재난·위험 시설물의 <u>보수·보강</u>	1. 2. (개정안과 같음) 3. 그 밖에 재난·재해 등으로 인한 위험 시설물의 <u>보수·보강</u>
<u><신설></u>	4. 재해 우려가 있는 석축, 옹벽 등의 <u>보수·보강</u>	<u><삭제></u>
<u><신설></u>	5. 공용부분의 상수도, 하수도, 가스공급시설 등의 <u>유지보수</u>	<u><삭제></u>
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소규	② ----- ----- -----	② ----- ----- -----

모 공동주택으로서, 국민
주택규모 이하가 50% 이
상인 공동주택 및 건축물
로 한정한다. <단서 신
설>

③ 제1항에 따른 예산의
지원범위와 절차, 방법 등
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
한다.

-----. 다만, 시장이 안전
관리가 시급하다고 인정
하는 경우 300세대 미만
으로서 승강기가 미설치
된 공동주택에 지원할 수
있다.

③ (현행과 같음)

----- . 다만, 시장이
안전관리가 시급하다고
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
로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-----

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「건축물관리법」에 따른 점검 또는 보수·보강 등의 지원을 받은 소규모 공동주택은 제외한다.

제5조의2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그 밖에 재난·재해 등으로 인한 위험 시설물의 보수·보강

제5조의2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시장이 안전관리가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제5조의2제3항 중 “제1항”을 “제1항 및 제2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5조의2(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) ① 시장은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34조에 따라 구청장이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 <단서 신설>	제5조의2(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. 다만, 「건축물관리법」에 따른 점검 또는 보수·보강 등의 지원을 받은 소규모 공동주택은 제외한다.
1. · 2. (생략) <u><신설></u>	1. · 2.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,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% 이상인 공동주택 및 건축물로 한정한다. <u><단서 신설></u>	3. 그 밖에 재난·재해 등으로 인한 위험 시설물의 보수·보강 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. 다만, 시장이 안전관리가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③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범위와 절차,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.	③ 제1항 및 제2항----- ----- ----- .